

告示第九號

(四三六·七·二五)

건축사 지정구역제한

都市計劃課

서울특별시

參照

市街地計畫令施行規則沿革

第四十四條 市長 計畫令第三十七條但書第三十九條至

第五十七條第一項의 規定에 依는 處分을 하고는 第五十七

條 第六十三條至는 第六百六條의 規定에 依는 處分을 할 때

에는 主要領을 告示할 것인 但計畫令第三十七條 但書에는 第

三十七條 第一項의 規定에 依는 處分은 輕微한 것인 對하

는 此限에 不在한 것인

市街計畫令

第二十七條 建築線은 都市計畫區域內에 있어는 道

路幅境界線으로 한 總特別地事由가 있을 때는 行政官庁

은 都市計畫區域內에 있어는 建築線을 指定할 수 있다

(三考)

반기문스스틴 2월 일

부시강

서재문구청장 알

건영

주제 의견에 관하여 市街地計畫令 제 27 조의 규
정 이하에 指定承認) 한 전 축선을 동
경지행구축제 44 조의 규정에서 ^하별지와 같
이 고사 하였으니 본건 시행에 만전을 기하시

알

(2호)

단기 43년 7월 일

시령

홍범주 일

권병

단기 43년 7월 일자로 취하의 출원 ~~에~~

~~내지~~ 권병에 한 권추신을 취하와 갖이 고

사 하였나 읍기 이에 통지 함

기

고지번호 서울특별시고시 제 호

고지번호 단기 43년 7월 일

고시장소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

14호

대기영수년 2월

일

도시계획과장

공보과장

건영

주제외간 市街地 計畫令 제 27 조의 규정에 의

하여 ~~제제~~ ^{추원} 相違承認) 한 건축선을 동령시행규

칙제 14 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같이 고시하

게 되었으나 반시면에 년의 주지 재하여 주심을 무방

하나이다

